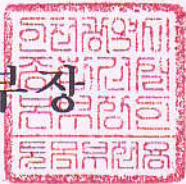


인천도시관리계획(검단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(안) 공고(재공고)

인천도시관리계획(검단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)변경결정을 위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. 1. 2.

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



1. 검단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요내용

구 분	변경내용	비고
지구단위계획 구역	○ 지구단위계획구역 : 999,838.7㎡ ⇒ 999,838.8㎡(증 0.1㎡) - 환지처분을 위한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구역계 조정	
용도지역	○ 제1종일반주거지역 : 38,077.0㎡ ⇒ 38,077.1㎡(증 0.1㎡)	
도시계획 시설	○ 도 로 - 대로 3-58호선 : 지구내 연장 변경 - 중로 2-276호선 : 폭원변경 16m ⇒ 19.5m, 연장(변경없음) - 소로 1-22호선 : 폭원변경 10m ⇒ 9~10m, 연장(변경없음) - 소로1-6호선 : 도로개설현황에 따른 폭원 축소 ○ 공원(근린공원) : 왕길동 산113-1번지일원 15,734㎡ ⇒ 15,744.7㎡(증 10.7㎡) ○ 완충녹지 : 마전동 718번지일원 882㎡ ⇒ 777.4㎡(감104.6㎡)	
획지계획	○ 73블록 - 5로트:354.5㎡, 6로트:1,220.4㎡, 8로트:282㎡ ⇒ 6-1로트:931.9㎡, 6-2로트:291.5㎡, 6-3로트:411.9㎡, 6-4로트:222.6㎡	
허용용도	○ 79블록1로트(E-6) : 공공시설 ⇒ 공공시설(문화시설, 교육연구시설, 운동시설 등) ○ 58블록(C-2) : 5층이하/최저3층(규제) ⇒ 5층이하/최저3층(권장) ○ 60블록2로트 : 연립주택 → 다세대 및 연립주택	
오기정정	○ D-1 상업용지(1-5-6-7-62-63-64-65-67-68블록) - 높이 25m미만도로 : 8층이하 ⇒ 7층이하	

2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-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- 의견제출 :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열람장소

-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(☎ 440-5189), 서구청 도시개발과 (☎ 560-5774)